



# 세계건설시장 진입장벽 및 규제현황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DR타결의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 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연재한다.

## [2]아시아

### (1) 말레이시아

#### ① 면허 및 입찰제도

외국 건설업체는 현지업체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51% 이상 지분을 현지법인업체에 할당해야 한다. 단, 프로젝트베이스로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공사의 입찰은 현지 유관기관 면허소지자나 발주처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로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 A등급의 자격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입찰이 불가하다.

#### ② 정부의 차별적 구매

자국산품이 아니더라도 자국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재 조달시 추천되지 않은 수입건(輸入先)으로부터 구입시 자국업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케 하는 등 자국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자재 수입시 현지생산 가능 품목의 경우 40%내외의 고관세(高關稅)를 부과하고 해상장비류 등과 같은 특수건설장비는 무관세(無關稅) 또는 저관세(抵關稅)이나 일반공사용



장비 수입시에는 고관세를 적용한다. 단, 재수출(再輸出) 조건으로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하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용으로 수입한 외자재분(外資材分)의 FOB 가격에 상당하는 현지산품 구매를 해야 한다.

③ 정부의 제한적 관행 및 노동력 이동

자국민 보호정책(부미프트라 정책)으로 현지 고용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 근로자의 노동허가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 자국업체 이용 및 일정비율 이상의 노무자에 대하여 현지인 고용 의무화가 되어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30% 이상에 대하여 부미프트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고용이 어려운 직종(또는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발급함으로써 인력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종업원의 구성이 민족구성비를 반영해야 하고, 현지인의 고용시 훈련 및 등용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취업허가서 발급시 수수료부과 및 통상 4~5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수 수 료	매니저급 엔지니어 기능공	200링기트/월 150링기트/월 100링기트/월
-------	---------------------	----------------------------------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노동력유입에 대해 제한적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엔지니어 이상인 경우 노동허가 획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350명 정도의 자국전임노동자(Full-time workers)를 고용하는 외국기업은 주주권 소유에 제한이 없다.

④ 국내공급요건 및 투자장벽

공사별 입찰서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의 경우 소요되는 인원 및 장비, 자재 등의 수송시 자국의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신경제정책(NEP)에 의해 지방적사업에 있어서 외국인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투자장벽

이 설정되어 있다. NEP의 투자목적중의 하나는 기업 소유권 소유비율중 30%를 부미프트라로 구성하려는데 있으며, 이러한 주주권 소유비율조건은 신속적인 지침을 통해 조절한다.

외국계기업(외자비율 51% 이상 기업)이 1,000만 링기트 이상의 현지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조달자금의 60%를 지방소재은행에서 조달하도록 강요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합계금액이 100만 링기트 이상인 차입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2)인도네시아

① 면허 및 입찰제도

외국건설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공사업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비는 일만 달러이다.

PQ 및 입찰 참가시 현지업체와의 합작 참여를 의무화했다. 국영석유가스회사공사 참여시 동자부 석유가스국(MIGAS)에 업체 등록을 해야하는데 외국업체는 현지업체와 JV는 89년 규제완화시 외국업체에 개방했으나 관계부처인 공공사업성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준비중인 관계로 실제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

순수 현지업체 또는 현지업체의 참여비율이 50% 이상되는 Joint Operation, Joint Venture만이 입찰시 7.5%의 가격 우대가 적용된다. 이는 IBRD의 현지업체육성정책에 의거한 것으로 대부분 IBRD 차관공사에 적용되고, 입찰 견적서상에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입찰 평가시 15% 상향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정부예산 발주공사는 현지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고 외국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공사금액이 3백만불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국제입찰에 붙인다.

건설소요 자재중 현지 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현지 생산업

선진국 및  
한국의 건설현장 규모  
  
단위 : 억달러(%)

		'90	'91	'92
미	국	4,487(18.1)	4,483(17.9)	4,837(18.4)
일	본	5,711(23.1)	5,843(23.3)	6,158(23.4)
서	유럽	7,047(28.5)	7,145(28.5)	7,311(27.9)
한	국	375( 1.5)	392( 1.6)	368( 1.4)
기	타	7,107(28.8)	7,217(28.7)	7,623(28.9)
세계 전체		24,727(100.0)	25,080(100.0)	26,317(100.0)

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고 장비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지 생산되지 않는 장비인 경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건 별로 중고장비를 반입할 수 있다.

정부발주공사인 경우 관세유보조항에 의거 재반출조건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장비 간이 등록시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

③ 국내 공급요건

정부발주공사용 자재운송은 자국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해야 하며 정부구매의 대부분은 외국기증자의 도움을 통해 공급을 받고 있다.

외국업체의 자금조달시 그에 따른 구매요건이 부과되는데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의 건설공사 수행시 가능한 국내상품과 서비스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2년 이래로 정부(지원)건설공사나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시 계약금액과 동일한 물량의 인도네시아 상품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④ 외국인 투자 및 세계

외국인 투자는 주로 외국인자본투자법과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규정하고 자본투자조정 위원회와 타 관련기관은 자국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법인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형태를 취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측 파트너의 지분비율은 합작기업설립시 20% 이상이며 생산개시후 15년 이내에 파트너측 지분비율이 최소한 51%까지 높아져야 한다. 외국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금액이 25만 달러 이상의 안건(案件)만 허가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세무협정에 의거 현

지에서 국내로 지급되는 이자와 로얄티, 배당금 등에 대해 10%의 원천세를 적용해왔으나 동 정부는 요건을 강화하여 매년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원천세를 부과하고 제3자 지급보증에 의한 외화차입을 규제하는 등 인도네시아 당국의 세무요건 강화로 송금에 애로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⑤ 현지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에 한해 외국인의 취업을 인정하나 동기간내에 인도네시아인으로의 대체를 준비해야 하는 등 건설현장 소요인력중 외국인 취업가능 직종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취업 가능 직종중 기술전수 가능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동기간 동안 현지인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초과될 경우 매월 150달러의 현지인 교육훈련비를 지불해야 한다.

취업비자 발급시에는 노동인력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추천으로 노동부 승인을 득한후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3)싱가폴

① 면허 및 입찰제도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PQ 입찰참가자격을 PKK (Pusat Khidmat Kontractor) 등록업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토목, 건축공사 발주시 주로 적용된다. 외국업체는 PKK등록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대규모의 공사는 입찰상 혼잡을 피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채택하는데, 공공공사의 도급가격결정은 해당부서나 자치단체 등의 규정에 따르고 공사관리는 관계기관에서 관장한다.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현지업체와의 JV 또는 콘소시엄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업체 참여 극대화 및 공사금액의 30% 이상 부미프트라 참여를 요구하는 등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한 편이다.

공사용으로 수입한 외자재분의 FOB가격에 상당하는 현지 상품의 구매를 요구하는데 현지업체의 토목 및 건축공사 실적을 평가하여 관공사 입찰시 외국업체보다 0.2~5% 가격차등을 적용한다.

② 노동력 이동

현지인 對 외국인의 고용 비율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하여 현지인 고용증대 및 외국인력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다. 외국인 5명당 자국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현지 고용이 어려운 직종 및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취업허가 신청시 통상 4~5개월의 장기 심사후 발급함에 따라 적기 인원 동원이 어렵다.

月收入 1,500 싱가포르 달러 이하는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1,500 싱가포르 달러이상 급여의 경우에도 발급기준이 대졸학력 및 상당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어 필수요원의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취업허가 기준이 까다롭다.

가설 건물건설규정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일반주택개발공사의 아파트를 외국인이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근로자 및 직원의 숙소 구입에 난점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공아파트가 주택의 80%이며 나머지는 고급 민영 아파트 및 고소득층용 단독주택이다.

③ 해상 장비류 등과 같은 특수건설장비는 무관세(저관세)이나 일반공사용 장비수입시에는 40% 내외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소용되는 인원과 장비, 자재의 수송시 자국의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태국

① 면허 및 입찰제도

외국인 사업법에 따르면 지분율 50% 이상의 외국건설업체에 대해 참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업체(지분율 50% 이상)는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으로부터 투자 장려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가 허용된다. BOI 승인시는 국산화율, 단계적인 자국측 지분율 인상 등 까다로운 허가 조건이 부과된다.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초고층빌딩 또는 BAS(Building Automation System)빌딩건설 발주시 외국업체에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발주시에는 태국 업체에만 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② 노동력 이동

외국업체는 공사계약 체결후 태국 상무성에서 사업허가를 취득한후 필요한 인력의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취업허가서를 취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의 정식 투입까지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工期에 압박을 주게된다. 특히 낙찰통지서 발급일로부터 工期를 起算하는 공사가 다수이므로 工期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취업규제법에 의거 39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중 토목, 건설감리, 건축설계 등 건설관련 직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 취업제한 직종에 대해서는 BOI의 승인 또는 상무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하여 태국 현지 취업이 가능하다.

외국인 사업은 A, B, C업종으로 구분되어 외국업체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 OA업종: 건축, 빌딩건축, 회계, 광고업 등
  - 지분율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의 투자금지
- OB업종: 호텔업, 항공운송업, 관광업, 목재가공업 등
  - 지분율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의 투자금지
  - 태국측 지분참여 50% 이상 확보

우리나라는 태국에 진출하여 '93년말까지 총 10억 달러 수주

- 금년에는 파타나칸 주택개발공사(1.8억 달러 규모)를 포함한 10건 공사를 5.2억 달러에 계약
- 태국건설시장 규모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2위
- 최근 민간정부 출범에 따른 經濟活性化로 건설경기 호조

OC업종 : 수출업, 광업, 기계장비업, 기타 건설업 등

- 투자청의 투자장려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

③ 정부의 제한적 관행

현지업체간의 담합 또는 태국의 유수업체와 정부기관간의 유착(특히 대형 토목공사일 경우)이 심하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정비 수입시 태국 선박운송이 가능한 지역은 자국 선박이용을 강요하고 있다.

④ 보증 및 세제

발주처는 통상 태국 정부에 등록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서 발급을 태국계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적 근거없이 주로 발주처 임의로 제한하고 있으며, 1급 국제 규모의 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업체는 매출액의 5%이며 자국업체는 매출액의 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5) 필리핀

① 건설업 면허

필리핀내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발급기관을 PCAB(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라고 하는데, 외국업체의 경우는 SEC(Securty & Exchange Commission)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사전 청구하여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SEC에서는 공중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필리핀 국내에서 자금조달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필리핀인의 지분이 75% 이상인 외국업체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되며 민간채원 조달공사의 경우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업체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되고, 국방관련 건설공사의 경우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업체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된다.

PCAB에서 면허발급시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자국업체에게는 정규면허를 발급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게 한다. 필리핀인 지분이 59% 이하인 외국업체에게는 특별면허를 발급하여 당해 1개 프로젝트에 한해 프로젝트 추진시마다 다시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PCAB에서 특별면허발급은 정규면허발급시 검토하는 재정, 기술진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외에 SEC의 증명서 및 국제입찰과 국제자본조달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제도

PQ심사시 외국업체의 경우 입찰초대증명서의 사본 제시를 요구하는 등 필리핀업체의 건설공사참여를 최대한 제고하고 있다. PQ심사는 PCAB 또는 PQ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특별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에 대한 PQ 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공실적에 의한 기술적 능력
- 관리직 및 기술자 보유실태
-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발급된 주거래 은행이나 재원조달자에 대한 진술서
- 투입되는 장비의 적정성 등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가부 결정

외국업체는 외국채원 제공기관에 의한 국제입찰 프로젝트(차관공사, 원조공사, BOT 등)에 한해 참가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금융조



달기관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입찰절차에 따라 입찰에 초청될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 ③ 노동력 이동

원칙적으로 필리핀인 이외의 외국인 고용은 필리핀인의 기술적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직종에 한해 고용이 가능한데 필리핀인 이외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고용된 후에는 노동 및 고용성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직종을 바꾸거나 타회사에 고용될 수 없으며 지정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여야 한다.

감독권이 있는 발주처는 자국민이 행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을 추천할 수 있다. 실제로 발주처에 외국인 고용계획을 제출하면 발주처가 검토후 관계기관(노동 및 고용성, 이민국)과 협의하여 근로자 BLOCK VISA(1년 단위 갱신)취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내 진출기반이 없는 신규 진출업체는 Entry Single Visa(30-59일)로 입국한 다음 공사수주후 발주처 추천에 의해 이민국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등록기업의 기술자, 경영자로서 필리핀인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외국인의 고용이 인정된다.

## ⑥ 인도

### ① 입찰제도

대부분의 경우 입찰자격을 자국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ADB 지원자금에 의한 대규모 공사에 한해 국제입찰이 가능하고 인도업체와 콘소시엄구성 응찰시 유리하다.

### ② 정부의 제한적 관행

외국업체의 수주액중 20% 이상을 인도업체에 하청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인도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건설자재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 ③ 노동력 이동

교육을 통한 현지인력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기술직 인력에 한해

장기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④ 국내 공급요건

자국건설업체가 국제입찰 공사수주시 유사 수출업체로 인정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며 장비 반입시 관세를 부과하고 공사후 재반출시 환급을 해준다. 현지업체에 15% 가격 우대를 적용한다.

### ⑤ 외국인 투자

외국협력회사의 자본금 조달에 대한 인도 정부의 기본방침은 그 회사의 인도측 자본이 60% 이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 제휴의 경우 외자 출자비율은 51%까지 가능하다. 92년에 외국인 투자 제한완화 등 경제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으나 여전히 투자절차의 복잡 등 애로요인의 발생이 높다.

### ⑥ 기타

政情이 불안하며,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고, 자본재 수입시 고관세를 부과한다.

## (7) 파키스탄

### ① 정부의 차별적 구매

건설자재수입을 위한 상공부 허가 발급 및 통관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및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자재 및 장비수입(수송)시 자국선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② 정부의 제한적 관행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현지업체와의 JV참여를 권장하고 입찰금액 심사시 현지 업체에게 입찰금액상 7.5%의 우대를 적용한다.

### ③ 건설장비 반입

건설장비는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데 공사 완공후 현지 매각을 막고 재반출 보장을 위하여 재반출 불이행시 수입가액의 200% 지분을 약속하는 본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금융지원상의 제한

현지화 차입 또는 당좌이월은 현지업체에 게만 허용된다.

## 해외정보

對 중국수주추이

'66~'89	'90	'91	'92	'93	총 계
-	-	32	-	67	99

단위 : 백만달러

중국은 건설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개발의욕이 높음

-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건설업 안정 성장
- 세계은행, 외국정부 및 외국인 투자 적극 권장
- 地域 開發戰略에 따라 전국토의 건설화 추진

### ⑤ 외국인 고용

파키스탄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은 현지인 고용시 아래와 같은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월급 1,000루피 미만인 경우 100% 파키스탄인 고용
월급 1,000-2,500루피일 경우 75% 파키스탄인 고용
월급 2,500루피 이상 50% 파키스탄인 고용

파키스탄인 종업원에 적용되는 급여, 수당, 기타, 노동조건은 非파키스탄인 노동자는 그 급여의 1/3을 한도로 하여 외국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3] 북방지역

### (1) 중국

#### ① 입찰제도

1984년 국무원이 제정한 입찰제에 의거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전통적인 방법은 정부의 건설유관부서에서 건설업자를 지명하며, 대도시에서는 수의시담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외국설계회사는 반드시 중국설계기관(회사) 합동으로 일하도록 정해져 있다.

중국에서 설계는 설계회사에서 시공은 건설회사에서 담당하도록 엄격히 구분되므로 패키지 발주는 허용이 안된다. 따라서 중국 소재의 1개 업체가 2개의 업종취득이 불가능하며 중국내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 중국관계 법규상 중국 시공업체와 합작으로 별도의 합작시공업체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건설공사계약은 영국식 영향을 받아 하청자 선공과 공사대금지불에 관한 권한을 원청자에 두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업체는 철골공사, 특수 외장공사,

기계공사, 고품질 마감공사 등 특수공정에 대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경우 산하에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등을 두고 있어 입찰시 산하업체에게 대부분 공사를 내정한다.

국제차관 공사를 제외한 內資에 의한 공사는 현지업체에만 참여를 허용하고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실제시공은 현지업체가 담당토록 요구하며 외국업체의 경우는 건설관리(CM)와 중국측이 수행할 수 없는 공종에 참여를 허용한다.

외국업체가 현지업체와 합작하거나 단독 진출하는 경우에도 기술 및 경영관리습득과 중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분야에 제한한다.

국영기업 이외는 원칙적으로 공사 소재지역의 공사만 가능하며, 타지역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지역 건설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성·시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지방정부와 체결된 후에도 중앙정부와 은행 등으로부터 승인 과정에서 수정제의가 빈번하여 외국기업이 진출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 ② 건설자재 및 장비

중국은 한 재화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가격이 존재하는 二重配分體制로 인하여 원자재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스스로가 원자재를 중국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여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적정조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국내 및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동



일한 조건에서는 국내 조달을 우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 플랜트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수입신청은 지방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며 승인이 나면 수입이 가능한 등 중국은 中央執權計劃에 의거하여 건설자재와 장비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과 이윤도 결정하고 있다.

합작공사는 승인만 얻으면 어떤 종류의 플랜트나 장비도 수입을 할 수 있으나 사용후 재반출하지 않으려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필요한 자재목록을 작성하여 국가자재配定局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당국의 승인이 나면 즉시 외국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노동력 및 임금

노동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였고 노동력의 유동성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력의 적기 확보와 효율적인 노무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 및 해고의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JV기업의 경우 중국측 파트너의 기존 노동자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기업의 경우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노동복무공사 등 중국측 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지방의 숙련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지역 노동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노동력이 적기 확보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중국측 정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영기업 임금의 120%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여러 명목의 수당과 국영기업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주택, 의료, 연금 및 복지시설의 이용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통상 기본급은 임금의 150-200%에 달하고 실제 노동자가 수령하는 금액의 70-100%정도는 국가기관에

지급 혹은 예치하게 된다.

### ④ 투자 및 외화

BOT, BOO방식의 프로젝트는 공사금액이 대형일 경우가 많아 투자가 어렵고, 투자후에도 회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건설투자대가로 주는 지역개발권이 있으나 먼저 투자분의 회수없이 개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사무실, 주택의 경우 분양대상이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적고 사업에 한계가 있으며 내국인에 허용되어도 인민폐가 兌換性이 없어 곤란하다.

외환부족과 元貨의 不兌換性으로 果實送金과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외환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계획단계의 협상 과정에서 부터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업 활동에서 관료체제와 충돌하게 되는 등 중국의 복잡한 관료, 행정체제와 관리들의 경영 간섭이 심하다.

## (2) 러시아

### ① 면허 및 입찰제도

러시아내에서의 건설업 면허 취득은 필수적이다. 공화국별로 건설업 면허 요건이 상이하며, 공공공사 입찰시 사전 PQ 심사를 통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공사는 물론 공공공사도 대부분 지연에 의해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 ② 합작투자 허가 및 등록

대규모 건축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측 파트너가 기업설립개요,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의 서류를 상급 행정조직에 제출하여 합작투자기업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투자기업은 법인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로 재무부 또는 다른 적법한 국가기관에 등록을 요하며 외국인 투자액이 1억 루



**해외정보**

對 베트남수주추이

단위 : 백만달러

'66~'89	'90	'91	'92	'93	총 계
83	-	-	-	133	216

베트남 건설시장은 아직까지 진출여건이 성숙되지 않음

- 건설시장의 잠재력은 인정되나 개발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건설시장 관련 제도 및 법규의 미비

블을 초과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해외에 송금되는 외자측의 이윤에 대하여 20%의 과세가 붙으며 외자측 파트너는 외화 이익중 외자출자비율분을 해외송금 할 수 있다.

**③ 정부의 차별적 관행 및 구매**

구소련 군용주택공사(MRH)의 경우 소요 자재의 20%이상 독일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자재 수입시 거의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건설장비의 반입시 통관기간이 통상 50일 정도 걸리는 등 너무 오래 걸린다.

장비 수입의 경우 공사 완공후 재반출한다는 조건하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축 골조용 자재인 철근, 콘크리트, 골재, 벽돌 등은 수입이 원칙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

**④ 노동인력**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한 탓으로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50%로 현지 하도급업체의 노동력 자질이 수준 미달이다.

루블화의 不兌換性으로 발주처가 정부 혹은 현지업체일 경우 공사대금수령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법이나 외환관리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익금의 본국 송금에 장애가 많다. 가격 자유화 조치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와 생활수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있으며 교통,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3) 베트남**

**① 면허 및 입찰제도**

면허제도 : 건설공사 건별로 건설면허취득이 필요하며, 소요기간이 길고 허가요건이 까

다롭다. 지사설치법에 의하면 지사설치허가 시 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실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현지업체와 JV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입찰제도 : 입찰참가전에 건설부로부터 입찰참가서를 득해야 하며, 동입찰허가는 당해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있지만 외국 건설업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합작투자 당사자일 경우에는 입찰 획득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주요 사업시행도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되 설계, 기술검토, 검사, 기술지도 등은 필요시 건설부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에 대한 국제입찰조사는 사안별(CASE BY CASE)로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② 정부의 제한적 관행**

정부공사의 경우 해외자금이 필요하면 국제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나, 이 경우 해외 자금조달을 외국인이 해야 한다. 소요자재에 대한 최대한 베트남산 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내부방침상 외국 건설회사의 베트남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외국 건설업체는 주재국 노동력 및 자재를 최대한 사용해야 하지만 신기술과 현대적 장비 반입은 권장하고 있다. 합작사업의 경우에는 외국파트너의 중고장비 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은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베트남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인력에 극한다.

공사계약자는 설계를 입찰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베트남 설계회사에 특혜가 주어진다. 한편, 공사설계에 대한 지형, 형질, 지질조사 등 조사평가는 베트남 Survey Company만



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투자 및 세계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로는 인프라건설, 자원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수입채 및 수출촉진분야 등이며, 개별 안건마다 베트남 정부가 판단하는데 신청에서 인가까지 최장 3개월이 걸린다. 외자기업의 존속기간은 20년까지이며 자원개발, 대형설비투자, 장기 건설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한해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석유 등 자원개발분야는 계약에 의한 사업협력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며 합작회사의 설립시 법정자본은 上限이 없고 下限은 투자금액의 30%까지 가능하다.

세제 : 외국 건설업체가 베트남에서 시공시 공사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손익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3~9% 부과하며, 외국기업이나 피고용자는 계약만료후 재무회계상의 의무를 필했음을 증명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자본 및 투자이익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 ④ 현지 고용

외국투자기업은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베트남의 國庫에 적립해야 한다. 또한 지불급여 총액의 10%를 급여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중 2%는 국가에 귀속되고 8%는 기업내에 적립하는데, 이들 기금은 종업원의 출산 및 사고 등에 활용된다. 외자회사는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임대는 각료회의 및 현지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기타

- 사회주의체제의 장기간 지속으로 경제거래관행 및 법령 등 미비로 경제통계가 부정확하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행정체제로 각종 인허가시 장기간이 소요된다. 재원부족으로 공사자금의 현물결제가 예상되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가격평가가 어렵다.

- 숙련 노동력의 부족으로 현지 하도급시 하청업체 선정과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도로, 철도 등 수송시설 및 전력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비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

-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베트남내에서 인력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력이 허용됨에 따라서 외국인 고용시 지방노동사무소에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근무기간 및 베트남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훈련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 [라] 중동지역

### (1) 사우디아라비아

#### ① 면허 및 입찰제도

정부 발주공사 입찰시는 공공주택성의 건설업체 업종별 등급분류증서의 제시를 해야 하는데 동 증서의 발급요건은 諸 아랍장부 유지, 사우디 회계사 고용 등으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외국업체가 동 증서를 발급받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공사 참여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등급분류증서 발급시 등급을 명시하여 등급에 따라 1건 도급한도액을 제한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 그러나 갱신할 때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통상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증명서가 발급된다.

현지업체와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로 업체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86년 이후부터는 순수 외국기업의 신규공사수주 및 영업행위가 불가능하다. 외국업체에 대한 등급증명서 발급지연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의 자본출자비율을 5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우디 공공주택성은 건설회사를 능력에 따라 분류한 업자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업체는 총계약액의 30%를 현지업체의 하청을 주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우디정부 규정상 사우디지분이 51%이상인 현지합작법인에 대해서는 공사물량의 30%를 현지업체에 하도급을 주도하도록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외국업

## 해외정보

對 中동수주 추이

단위 : 백만달러

	'66-89	'90	'91	'92	'93	누 계
총 동	76,986	5,812	868	568	1,810	860,044
(사 우 디)	48,665	253	308	300	172	49,718
(리 비 아)	13,161	4,754	177	91	1,431	19,614
(이 라 크)	6,439	11	-	-	-	6,450
(이 란)	1,504	779	374	76	49	2,782
쿠웨이트	2,955	-	-	30	8	2,993
전체수주액	86,574	6,770	3,038	2,783	5,117	104,282

체가 사우디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 정부가 발행한 C/L(Commercial/License)을 보유해야 하고 C/L은 프로젝트별로 관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② 정부의 차별적 구매

정부기관에의 업무상 출입을 사우디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우디내에서 생산 조립된 자재, 상품 및 장비에 대한 우선적 구매 및 사우디표준규격(SASO)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기자재 사용시 국내 조달 불가 및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외국기업은 물론 현지합작법인까지도 수입업무취급이 불가능하며,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30%의 사우디산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사우디 중개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장비를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직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 ③ 정부의 제한적 관행

Aramco, Samarec 등 일부 국영기업체 발주 공사는 현지업체 및 합작법인에 한해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외국업체의 입찰참여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노동자의 입국비자발급 수량 제한 및 행정 절차를 통한 간접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은 총 종업원의 75% 이상을 사우디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사우디인에게 지불될 임금도 총 종업원 임금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신청할 시 현지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신청허가는 거절된다.

### ④ 외국인 투자

외국자본의 투자가 인정된 분야는 △제조 개발, 농업생산기술, 서비스제공 등의 개발프

로젝트일 것 △외국의 기술이전이 수반될 것 △외자투자위원회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리스트에 기재된 분야일 것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25~45%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법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 2) 이란

### ① 입찰 및 보증제도

이란기획성(PBO)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입찰가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PQ공사입찰시 제한된 초청방식으로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된다.

외국인 합작투자회사가 현지에 상주할 경우 외국인 상주 1인당 현지인 3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입찰확률이 5% 전후인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전담반 등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전 비용이 발생한다. 이들 조직을 낙찰시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비용부담이 생겨 결국 입찰자체의 참가를 외국회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란내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발주처에諸多 보증제출시 반드시 현지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은행과 현지은행을 통한 복보증 주선으로 본드수수료가 이중으로 들며 발주처는 수주업체가 각종 보증제출시 현지은행의 逆보증(Counter Cuarantee)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은행과 현지은행을 통한 복보증 주선으로 본드수수료가 이중으로 든다.

입찰시 기존 지출업체를 입찰 초청대상으



로 삼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기획원(MPB)에 등록된 업체 리스트나 석유성(MOO)의 자체 등록 리스트중에서 선정한다. 이들 초청 업체중에서 공사수행능력 및 현지 업체와의 제휴 가능성을 검토한 후 Shortlist업체를 확장하여 입찰서를 교부하고 있다.

**② 노동력 이동**

노동비자 발급이나 노동허가 연장 등을 고의적으로 지연함으로써 취소 사례가 빈번하고 신청한 비자 발급이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될 경우도 있다.

외국인 기능공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시 현지인 기능직종에 대한 발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의 축소허가 및 거주기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장기취업 체류 및 1회 거주허가를 3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인력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거주 재연장시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란 지역은 프로젝트별 Bloc Visa발급이 안되며 비자발급기간도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점 및 연락 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1명에 현지인 3명 비율로 외국인 비자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③ 정부의 제한적 관행**

자국화 정책의 강화로 단순시공 부분의 외국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대규모 공사 국제입찰시 현지업체와의 공동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재들에 대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임시 반입장비의 통관에 일정액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美 1달러당 IR(Iran Riyal) 70으로 환산한 美 달러화로 부과하므로 수수료 부담이 크다.

공사대금중 現地貨수령분의 송금 및 외화 매입불허로 현지화 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사계약조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육상 수송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등 수송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란의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각종 장비는 재반출 조건부로 수입이 허가되며 일단 수입이 된 장비는 여타 공사현장으로 轉用이 불가능하다. 공사 완공후 각종 장비를 철수(재반출)해야 하는데 철수장비의 상태가 반입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

현지인의 고용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보통 현지인 對 외국인 비율은 70:30으로 정하여 사실상 현지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3국의 인력고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시공업체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력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공사 및 선진기술을 요하는 공사일 경우 입찰 당시 제3국 인력사용요청과 발주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업체가 현지 신용으로 이란 국내은행에서 무담보 보증발급은 불가능하며, 외국은행의 담보로 지급보증을 받거나 100%현금담보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한국국적은행의 담보로 지급보증은 인정치 않고 있다. 보증금액이 現地貨일 경우 수수료도 현지화로 지급해야 한다.

**(3) 리비아**

**① 면허제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적인데 리비아 기획성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시마다 최초 등록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간을 요한다.

**② 노동력 이동**

이민국 등록기간을 기획성 등록기간과 일치시키고 있어 취업후 일년간 대부분 2번의 거주허가를 얻어야 한다. 취업허가 비용(현지인 훈련비 등)등 관련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입출국 제약으로 인한 원활한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③ 건설장비의 반입**

제작일자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한 장비

중동의 자국화 추이

단위 : 억달러

	'89	'90	'91	'92
총발주액(A)	129.0	203.4	181.4	221.2
자국주주액(B)	38.9	39.7	25.1	35.2
자국화율(B/A,%)	30.2	19.5	13.8	15.9

의 반입이 규제되어 있으며, 장비의 통관기간이 약 30-40일 소요되고 노후 장비 현지 폐기 시에는 관세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④ 외국인 투자제한

리비아는 외국인의 단독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리비아내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율은 49%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⑤ 강력한 자국화정책 추진

대부분의 리비아 제조업체는 국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Turn Key Base에 의한 일괄발주형태로서 신용장만 연도별로 분할하여 관련 설비 및 장비를 수입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리비아인의 고용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등의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4) 쿠웨이트

① 면허제도

현지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외국인 출자한도는 49%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현지업체와의 합작의무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입찰시 현지업체와 10%이내의 차이로 최저찰하더라도 현지업체에 낙찰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② 정부의 제한적 관행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한 외국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의 30%이상을 현지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요 자재의 30%이상을 현지업자 또는 외국기업의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국내공급요건

공사수행시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수송에 자국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공사 입찰시 중앙입찰위원회(CTC : the Central Tenders Committe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TC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발주공사의 입찰과정을 감독하고 있는데, 외국업체가 정부 발주공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쿠웨이트 에이전트(Agent)를 통하여 CTC에 PQ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PQ심사는 관련발주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외국업체가 PQ를 통과할 경우 이를 CTC에 PQ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PQ심사는 관련발주부서에

해외건설 전개 방향

- UR타결로 향후 세계시장의 질서개편 불가피
- 국내외 시장경제의 붕괴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시장지배판도 변화
- 생산요소의 국제조달 비중이 커지고 國際分業 등 건설산업의 국제화 진전
- 금융제공능력, 선진 기술보유 등 국제비교 우위에 입각한 경쟁질서 체계 확립
- 해외발주규모와 시장개방율 증가
- UR이 발효되는 '95년부터는 건설장벽 및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발주 대폭 확대
- 모든 회원국간 自由化 約束事項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 적용
- 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건설시장의 대외개방율이 80~90%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해외건설 수요구조가 多様化, 高度化될 전망
- 시공자금융, BOT 방식등 금융요청공사 사례증가
- 턴키베이스, 기술집약형 및 CM 발주공사 급증
- 노우하우, 입찰부대조건 등 비가격 경쟁요소의 중요성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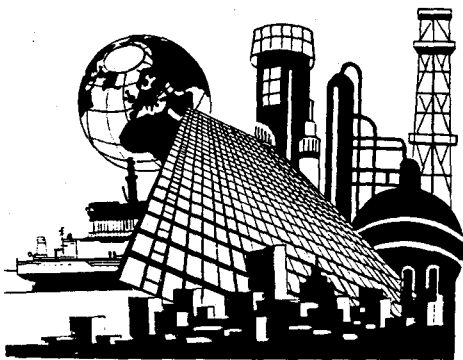
서 하게 되는데, 외국업체가 PQ를 통과할 경우 이를 CTC에 보고하며, CTC가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5) 터어키**

**① 외환통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터어키에 투자하거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당 5만불 이상(최근 15만불 인상계획) 도입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법인은 활동계획과 前年度 사업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필요시 이윤송금과 관련기업의 회계서류 및 세금계산서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세계건설시장의 다변화 및 진출심화**

-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 효과가 중국을 포함한 北方地域 및 기존의 미진출 지역으로 확산
- 개국도의 경우 自國化 政策의 弱화 등으로 수주여건 호전
- 미, 일, EU 등 선진국 건설시장의 개방범위 확대로 이들지역에 대한 진출 심화

**②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분야는 국제경제개발에 유용한 분야, 터어키 국내기업에도 허용된 분야, 독점 또는 어떠한 특허도 공여되지 않는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투자시 국가 기획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每件當 심의허가를 요한다.

투자한도 1억5,000만 달러까지는 국가 기획청의 외국투자국이 인가권한을 가지고, 1억5,000만 달러 이상은 외국투자국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각료평가회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 고용 및 노동력 이동**

석유산업에 진출한 합작회사의 경우 터어키 인을 외국인 총 고용기간의 1/4기간동안 진출기업의 본국 또는 제3국의 관계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연수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6개월 이상 터어키 국내에 고용될 경우 국가 기획청의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6) 이집트**

**① 면허 및 허가**

특별한 면허취득요건은 없다. 단, 법인세 납부 등을 위하여 C/R(Commercial/Residence) 및 세금카드 등을 구비해야 하고, 이집트내 건설협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입찰 및 보증제도**

사전 PQ심사를 통한 제한 입찰이거나 또는 공개입찰을 적용하며, 재원에 따라 입찰참가 국가를 제한하고 있다. 입찰보증은 주로 입찰금액의 2%에 해당된다.

**③ 정부의 제한적 관행**

정부공사의 경우 그 재원에 따라 지역 및 수주국가가 제한되어 있다.

**④ 현지인 교육**

전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이집트인 비율이 전체의 9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콘소시엄 진출기업은 동 비율이 75%이상이다. 또한 임금지불 총액의 80% 이상을 이집트 종업원에서 지불해야 한다.